

제289회 임시회
성 북 구 의 회

의안 번호	제474호
----------	-------

**- 2022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-
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(안) 검토보고서**

〈기획재정국 소관〉

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2022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(안)

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전문위원 이 명 주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474 호
-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제 출 일 : 2022. 3. 31.
- 회 부 일 : 2022. 4. 1.

2. 제안이유

2022년도 제1회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(안)을 『지방자치법』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3. 편성 개요

- 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	기정예산		비교증감	
	예산액	비율	예산액	비율	증감액	증감률
계	945,084,401	100%	882,413,020	100%	62,671,381	7.10%
일 반 회 계	922,755,964	97.64%	865,879,338	98.13%	56,876,626	6.57%
특 별 회 계	22,328,437	2.36%	16,533,682	1.87%	5,794,755	35.05%
의료급여기금	820,510	0.09%	820,510	0.09%	0	0.00%
건 축 안 전	2,343,447	0.25%	2,343,447	0.27%	0	0.00%
주 차 장	19,164,480	2.03%	13,369,725	1.52%	5,794,755	43.34%

□ 총 예산규모

○ 기정예산액 8,824억 1,302만 원에서

▶ 금회증감액 626억 7,138만 원이 증가하여

○ 2022년도 총예산규모는 9,450억 8,440만 원으로

일반회계 568억 7,662만원이 증액된 9,227억 5,596만 원,

특별회계 57억 9,475만원이 증액된 223억 2,843만 원으로

▶기정예산액 대비 7.10% 증가한 규모임.

○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

▶ 세입규모는 392억 2,489만 원으로 추경 재원의 68.9%이고

기획재정국 213억 6,777만원

안전생활국 134억 8,019만원

행 정 국 43억 7,693만원

▶ 세출규모는 242억 8,186만원으로 추경 예산의 42.6%입니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	기정예산		비교증감	
	예산액	비율	예산액	비율	증감액	증감률

일반회계 총 예산	922,755,964	100%	865,879,338	100%	56,876,626	6.57%
계	302,992,123	32.83%	278,710,259	32.18%	24,281,864	8.71%
감사담당관	288,361	0.03%	281,761	0.03%	6,600	2.34%
기획재정국	60,995,944	6.61%	56,208,901	6.49%	4,787,043	8.52%
안전생활국	74,178,196	8.04%	60,165,089	6.95%	14,013,107	23.29%
행정국	167,529,622	18.16%	162,054,508	18.72%	5,475,114	3.38%

4. 기획재정국 추가경정 예산(안)의 규모 (단위 : 천원)

☐ 예산의 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(△)감	
			금액	비율(%)
세입	451,016,558	429,648,779	21,367,779	4.97
세출	60,995,944	56,208,901	4,787,043	8.52

☐ 부서별 세입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(△)감	
			금 액	비율(%)
계	451,016,558	429,648,779	21,367,779	4.97
기 획 예 산 과	221,024,457	221,021,457	3,000	0.01
재 무 과	92,001,373	70,698,437	21,302,936	30.13
주민공동체과	249,802	220,909	28,893	13.08
세 무 1 과	134,983,742	134,983,742	-	-
세 무 2 과	2,589,354	2,589,354	-	-
지 적 과	167,830	134,880	32,950	24.43

○ 세입 주요편성 내역은

- 2021회계연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본예산 편성분을 제외한 재원의 일부와 국·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213억 6,777만 원을 1차 추경에 편성한 내역임.

□ 부서별 세출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예산안	기정예산	증(△)감	
			금 액	비율(%)
계	60,995,944	56,208,901	4,787,043	8.52
기 획 예 산 과	57,074,816	52,349,616	4,725,200	9.03
재 무 과	564,502	564,502	-	-
주민공동체과	1,740,433	1,711,540	28,893	1.69
세 무 1 과	665,393	665,393	-	-
세 무 2 과	606,317	606,317	-	-
지 적 과	344,483	311,533	32,950	10.58

□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

-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의 9.03%인 47억 2,52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
 -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을 운영비에 300만원 증액
 -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해·재난 목적예비비로 47억 2,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
- 주민공동체과는 기정예산의 1.69%인 2,889만원을 증액하여
 -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2,600만원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289만원을 증액하였고
- 지적과는 기정예산의 10.58%인 3,295만원을 증액하여
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등에 2,295만원을 편성하고 보행자
중심 도로명판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에 1,000만원을 편성하였음.

4. 검토의견

□ 기획재정국의 2022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(안)은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

□ 기획재정국의 2022년도 제1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,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며,

○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

- 기정예산액 4,296억 4,877만 원 대비 4.97% 증가한 213억 6,777만 원을 증액하여 4,510억 1,655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.
- 세부내역은 국·시비 보조금 6,484만 원 증액, 순세계잉여금 213억 293만 원을 계상하였음.

○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

- 기정예산액 562억 890만 원 대비 8.52% 증가한 47억 8,704만 원을 증액하여 609억 9,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,
- 사업용도가 지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5개 보조사업에 6,484만 원이 증액되었고
-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로 47억 2,220만 원을 계상하였음.

○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며,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[관계법령]

지방자치법

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~③ 생략
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44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지방재정법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

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